



## 안전보험 청구 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청구서류첨부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팩스 또는 우편 제출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 1577-5939  
사고처리 전담창구 ▶ F. 02) 3148-9955  
수영구 안전관리과 ▶ T. 051) 610-4646

아름다운 도시 수영  
행복한 수영

2021년 전 수영구민은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안전사고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구  
Suyeong-Gu



##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결맞는 **“안전도시 수영”**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청장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600여 수영구 공무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부산의 어느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지역주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광안리 스마트문화타운 조성 등 문화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 결과 부·울·경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저와 수영구 공무원을 믿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이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수영구민 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 감염병 사망 담보도 추가하여 **코로나19로 사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영구민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국 어디서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기타 자세한 담보 목록은 옆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영구민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피해 발생 시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수영구는 앞으로도 수영구민의 곁을 지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구청장

## 수영구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연번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1,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한도 1,3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한도 1,000만원
6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7	청소년 유괴· 납치·인질 일당	· 만13세~18세 청소년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 10만원 (90일 한도)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한도 1,100만원
9	가스사고 상해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0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한도 2,000만원
11	감염병 사망	· 코로나19 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400만원
12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승객이 전세버스 이용하던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13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승객이 전세버스 이용하던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한도 100만원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 제외